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 안 번 호 | 제 2 호 |
| 보 고 년 월 일 | 2006. 5. 18. (제 2 회) |

보
고
사
항

국가인증제도 혁신 추진계획(안)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정세균 (산업자원부장관) |
| 제출년월일 | 2006. 5. 18. |

○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에서 국가품질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대통령님께 보고 ('05.4.29.)

- 세부 추진계획을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고
국가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토록 함에 따라

- 국가인증제도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「제2차 국가표준
기본계획」에 반영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 보고드릴

계획의 주요 골자

가. 국가인증제도의 전면 개편

- 법정 강제인증 대상 제품의 경우 안전성, 공공복리 등 품목군 별로 모듈화한 통합 인증절차를 도입하고, 국가대표인증마크를 개발하여 인증마크 혼란 방지
- 유사한 법정 임의인증은 통일·단순화하고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으로 중복시험에 따른 부담 경감
- 민간인증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기업·소비자 피해 방지
- 국가표준·기술기준간 상호중복, 국제부합화 등을 검토·조정하여 동일제품에 대한 정부기준의 이원화 방지

나. 국가인증제도 운영의 선진화

- 시험·검사 설비 확충, 인증 전문인력 양성, 인증기관 국제공인화를 통한 국제 신뢰성 확보 및 상호인정협정(MRA) 확대
- 인증제품 우선구매 규정 일원화, 서비스 분야 인증확대, 국가인증정보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강화

다. 인증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

- 특별법 제정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통한 인증혁신의 근거 마련
- 국가표준·기술기준 및 인증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체계화된 제도로 개편
-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「국가표준·인증제도 혁신실무위원회」와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추진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수립배경 및 경과 | 1 |
| II. 인증제도의 현황 | 2 |
| III. 인증제도의 문제점 | 6 |
| IV. 국가인증제도 혁신방안 | 12 |
| 1. 국가인증제도의 전면 개편 | 13 |
| 2. 국가인증제도 운영의 선진화 | 20 |
| 3. 인증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정비 | 26 |
| V. 기대효과 | 30 |
| VI. 추진계획 | 31 |

I. 수립배경 및 경과

계획 수립의 배경

- 부처별 다양한 인증제도가 소비자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
- 국내·외 공신력 확보도 곤란하여 산업의 경쟁력 저하

➔ “국가 인증제도의 혁신”의 필요성은 국회,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

추진 경과

- '04.10. 국정감사 : 인증제도 난립에 따른 통합 필요성 제기 (산자위 오영식, 김태년 의원 정책보고서)
- '05.4. 「국가품질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」 대통령 보고
- '05.5.~'06.5. 「인증제도혁신T/F팀」 구성 및 추진계획 수립
 - * 12차에 걸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개최 (산업자원부)
 - * 국내 인증업체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(500여 기업)

< 「국가품질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」 주요내용 >

- ① 부처별 인증업무를 종합·조정할 총괄관리 체계 구축
- ② 국가대표인증마크(National Mark) 및 모듈방식 인증제도 검토
- ③ 인증기관의 시설·인력 강화 및 인증정보 네트워크 구축
- ④ 국제적 인정기구 육성 및 인증기준의 국제부합화, 규격간 통일화

II. 인증제도의 현황

□ 인증제도 운영현황

○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평가¹⁾를 위하여 14개 부처에서 57개 법령에 근거, 80개의 법정 인증제도(강제·임의)를 운영

- 통일된 절차·기준·용어 등이 없이 부처에 따라 다양한 형태 혼재

* 예 : 인증, 인정, 검사, 검정, 형식승인, 인·허가, 지정, 등록 등

○ 안전, 품질 등 정부 규제차원의 인증에서 최근에는 민간의 자율적 인증제도가 확대되는 추세

- 협회, 조합, 시험연구원 등에서 자체규정과 기준에 따라 약 60여개의 민간인증을 운영

* 대부분의 민간인증기관은 정부의 관리·감독 대상기관

< 강제성에 의한 인증제도의 분류 (붙임 참조) >

| 구 분 | | 내 용 |
|----------|----|---|
| 법정 인증 | 강제 | 국민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(공산품안전인증 등 9개 부처 34개 인증) * 인증 취득 없이는 생산·유통이 불가능 |
| | 임의 | 환경보호, 에너지 절약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에 의해 시행하는 인증(환경마크 등 11개 부처 46개 인증) * 우선구매,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증 미취득시 사실상 시장진입이 곤란 (준강제 인증) |
| 민간인증 | |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민간에서 자율시행 (Q마크 등 60여개 인증) |

1) 적합성 평가(Conformity Assessment) : 제품, 서비스 또는 시스템 등이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활동

□ 국내 인증시장 규모

- 140여개 인증제도 운용, 인증시장은 약 2.2조원 규모
(시험·검사비용 포함)

| 합 계 | 강제인증 | 임의인증 | 민간인증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
| 140여개 | 34개 | 46개 | 60여개(추정) |

- 730여개 인증·시험기관에 약 12천여명의 심사인력 종사
- 인증업체 수 : 20만여 업체, 인증건수 : 210만여 건

□ 국내 인증시장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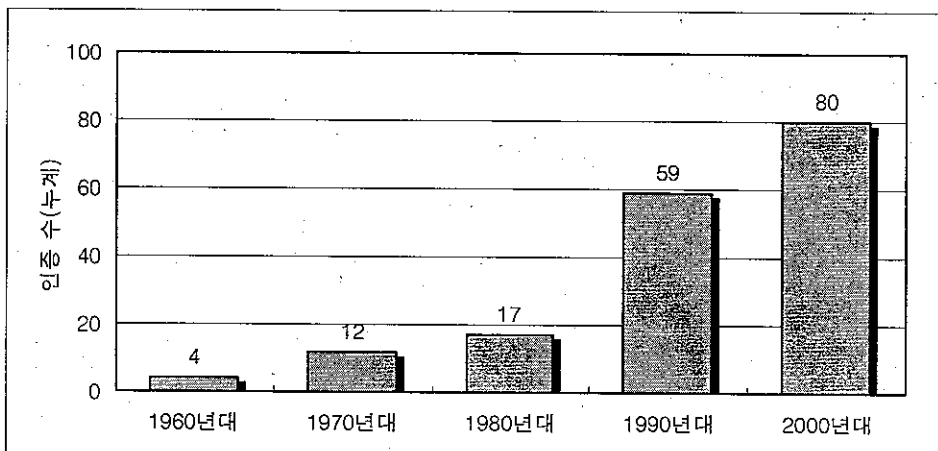
- 인증산업의 다양화

- '90년대 ISO 9000 출현 이후 인증제도는 "인증산업"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·다양화

* '90년대 이후 63개의 신규인증 신설 (현행 법정인증제도의 79%)

| 구 분 | '60~'69 | '70~'79 | '80~'89 | '90~'99 | 2000~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인증신설 수 | 4개 | 8개 | 5개 | 42개 | 21개 |

< 연대별 법정인증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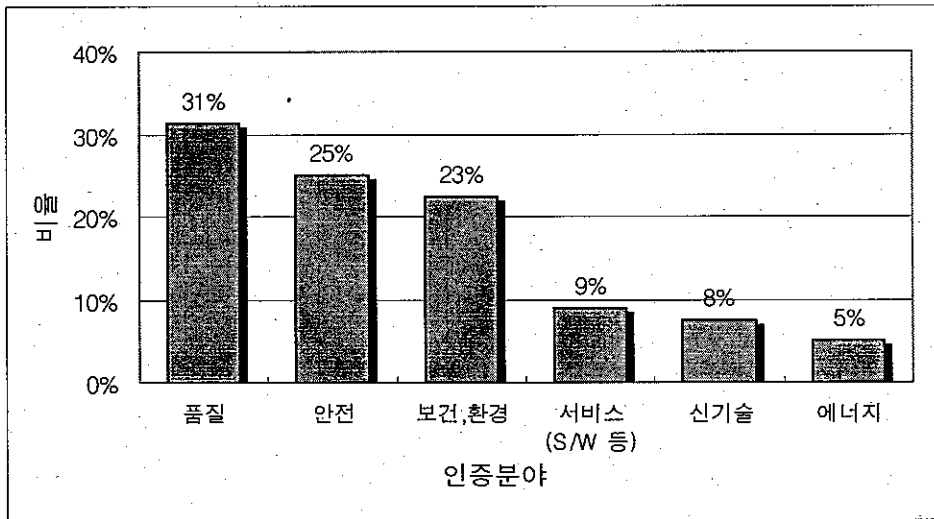


○ 새로운 분야로 인증산업 확대

- 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산업의 확대 등으로 새로운 시장
형성과 인증제도는 연계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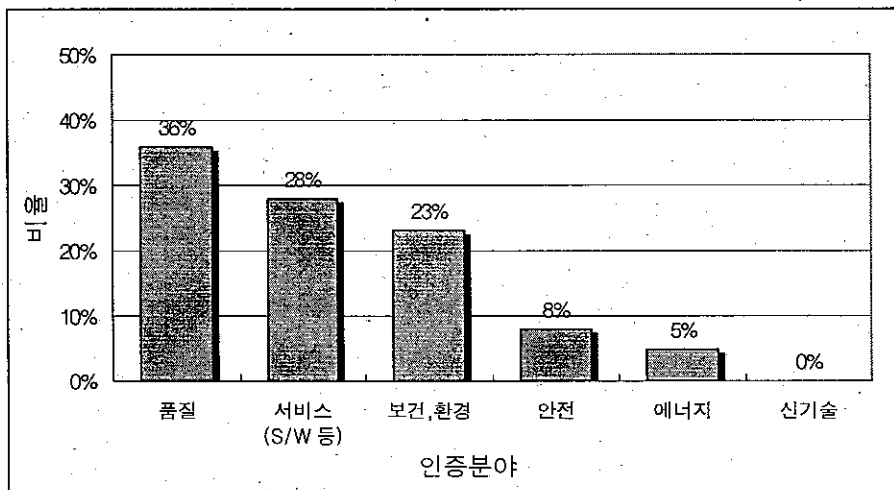
* 품질, 보건·환경, 안전, 에너지, 신기술, 서비스·디자인 등 전문화,
세분화 양상

< 전체 법정인증제도 운영현황 >



- 품질에 관한 인증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, '00년 이후에는
서비스, 환경 등 신산업 분야의 인증제도 확대 추세

< 법정·민간 인증제도 신규 도입현황(2000년 이후) >



< 인증제도와 표준 >

◆ 인증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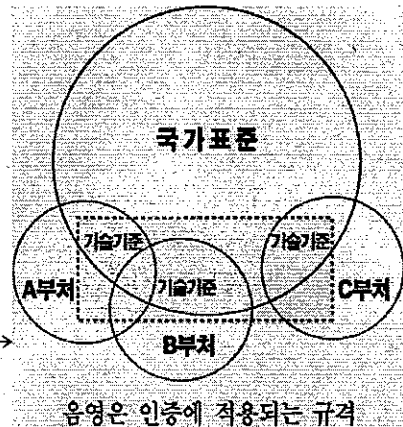
- 인증이란 제품, 서비스, 공정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제3자 (인증기관)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
- * 신청 → 인증기관 → 평가 → 인증(마크부여) → 사후관리
 (공인기관 수행이 원칙) (국가표준 또는 기술기준 적용)

◆ 국가표준²⁾

- 생산, 시험, 검사, 인증뿐만아니라 교육, 연구 등에도 공통적·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대표규격
- * 기술표준원의 KS(21,251종), 정보통신부의 KICS(457종) 등
- * 표준안개발 → 예고 및 의견수렴 → 심의 → 고시
- * 표준제정의 7대 원칙 : 통일성, 합의성, 자발성, 개방성, 투명성, 공공성, 시장적합성

◆ 기술기준

- 각 부처의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격
- * 19개 부처 86개 법령에 의거 1만6천여종
- * 개발(정부 또는 관련기관) → 입법예고 → 고시·공고



◆ 인증과 표준(국제표준, 국가표준, 기술기준, 단체표준)과의 관계

- 인증시 규격은 해당분야 표준 또는 기술기준을 적용
- 국가표준은 ISO등 국제표준과 부합화하여 제정(WTO/TBT협정)
-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은 이를 준수(산업표준화법)
- 단체표준(협회등 제정)은 민간규격이지만 국가표준과 상호연계 필요

2)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의한 국가표준은 측정표준, 참조표준, 성문표준(기준, 규격, 지침, 기술규정)으로 정의되지만 이 부분의 국가표준은 성문표준 중 임의표준으로 한국산업규격(KS), 한국정보통신표준(KICS) 등을 말함

Ⅲ. 인증제도의 문제점

가 인증제도의 중복·난립

□ 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혼란 초래

- 국가대표인증마크가 없고 안전·보건 등 품질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식별 곤란
- 마크를 접해 본 경험은 있으나 인증의 의미·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음

< 소비자의 인증마크 인지도 조사결과 >

| 마크 종류 | 마크를 본 경험 | 내용 인지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㉞ 마크, Q 마크, ㉞ 마크 | 90% 이상 | 61~86% |
| 환경마크 | 80% | 60% |
| ISO9000/14000, GR,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 | 20~30% | 10~23% |

* '02.12 대한주부클럽연합회

□ 강제인증의 부담

- 강제인증 품목의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른 인증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 증가

*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,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생산·유통 가능(일부 중복시험은 상호인정으로 면제)

< 강제인증제도 중복사례 >

| 구 분 |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| 전기통신 기본법 | 의료기기법 | 계량에 관한법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체온계, 혈압계 | | | ● | ● |
| 디지털비디오레코더 | ● | ● | | |

□ 임의인증의 중복 시험·검사

○ 중복검사로 인해 인증취득 소요시간 및 유지비용 증가

* 보온재는 총 5개 인증의 12개 평가항목 중 두께, 길이 등 8개 항목 중복

※ 제품당 시험·인증 소요비용은 생산원가의 0.5~2%

< 예시 : 제조업체 B사 인증 현황(건축용 보온재) >

| 평가항목 | 법정인증 | | | 민간인증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KS마크 (한국표준협회) | GR마크 (기술표준원) | 환경마크 (친환경상품진흥원) | Safety마크 (화학시험연구원) | HB마크 (공기청정협회) |
| 두께 | ● | ● | ● | ● | |
| 길이 | ● | ● | ● | ● | |
| 밀도 | ● | ● | ● | ● | |
| 전도율 | ● | ● | ● | ● | |
| 열간수축온도 | ● | ● | ● | ● | |
| 섬유굽기 | ● | | | | |
| 입자함유율 | ● | | | | |
| 재활용율 | | ● | ● | | |
| 유해물질사용(석면, 브롬화난연제 등) | | | ● | | |
| 인체자극 (피부, 안점막 자극 등) | | | | ● | |
| TVOCs | | ● | | | ● |
| HCHO | | ● | | | ● |

* 환경마크 인증은 KS 등의 법정시험결과가 있을 경우 시험결과를 인정하여 생략

□ 민간인증의 관리 취약

○ 민간인증의 상당수 품목과 기준이 법정(강제·임의)인증과 중복 운영

* Q마크 등 민간인증품목중 20% 이상이 법정인증품목과 중복

○ 인증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미흡으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

< 인증제도 설문조사 결과 >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○ 표준·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 | : 82% |
| ○ 인증간에 시험·검사가 중복 | : 70% |
| ○ 인증의 중복으로 사후관리, 인증유지 등에 부담 | : 64% |

* '06.1. 산업기술시험원(KTL)

나 적합성평가 역량의 부족

□ 인증시장의 구조적 낙후

- 일부산업 분야의 경우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미흡
 - 동일기관에서 인정·인증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국제 인증관행에 불일치
 - * 설문조사결과 인증획득 및 사후관리체계 등이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는 응답이 41% ('05, 산업기술시험원)
- 인증기관 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 발생
 - 부실·허위인증, 심사원의 자격미달, 시험·검사 능력 부족 등

< 예시 : 인증심사 부실 사례 >

- ISO 9000/14000 인증시 대상기업에 대한 심사 없이 인증서 발급('04. 8.)
- 수입의료기 일부시험을 생략하고 형식승인 시험성적서 발급('05. 2.)

□ 선진국 수준의 시험역량 부족

- 교정·시험·검사, 제품 및 시스템 인증에 걸친 대부분의 적합성평가 시스템이 국제수준에 미흡
- ISO, IEC 등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방법 중 국내 시험·인증기관에서 수행 가능한 규격 수는 전체의 65%
- * 해외 시험인증기관에 연간 2,000억 원 이상의 시험검사 의뢰

○ 인증 전문인력, 정보확보 애로

- 인증 전문인력,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정보(대상, 절차, 비용 등) 네트워크 등 부재

< 인증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 >

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
| ○ 인증기관의 전문인력 확충 | : 44% |
| ○ 정보 네트워크 구축 | : 38% |
| ○ 시험·검사설비 보강 | : 16%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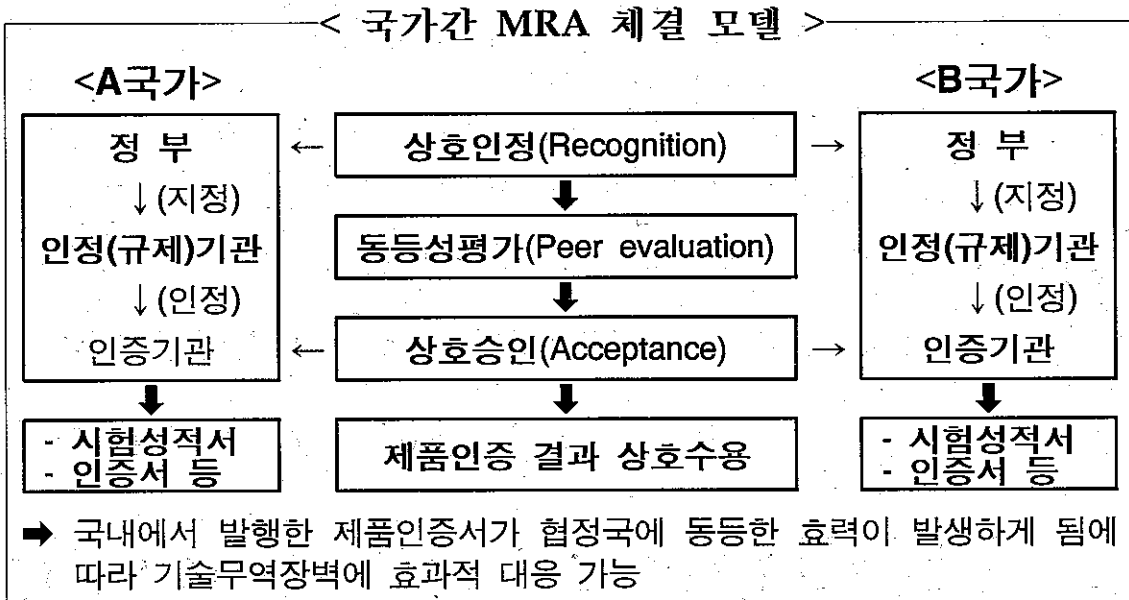
* '06.1. 산업기술시험원(KTL)

□ 인증기반의 취약으로 무역상 장벽 초래

- 기술기준 및 인증기관 운영기준이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간 상호인정협정(MRA) 추진 시 장애요인

*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(FTA) 및 상호인정협정(MRA)을 적극 추진

- 우리제품의 해외시장 진입시 중복시험 등 추가비용 발생
 - 해외 시험·인증기관에 시험의뢰로 인하여 기술적 노하우 유출 및 불법 기술이전의 우려



다 국가인증 관리 종합 시스템 부재

□ 국가표준·기술기준의 연계 미흡

- 각종 규격의 난립이 인증 혼란의 근본 원인
 -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의 제정·개정시 부처간 협의미흡 및 독자 운영으로 인해 중복·상이 현상 발생
 - * 동일 제품·서비스에 규격이 중복·상이할 경우 인증제도도 이원화
- 유사 규격을 여러부처가 제·개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초래
 - * KS 및 KICS에 「메시지 처리 시스템」 등 38종의 동일한 규격이 존재
- 국가표준을 활용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규격을 적용하여 제품·시설 개체 등에 많은 추가예산 소요
 - * 예 : KS 규격을 적용한 교통카드는 서울 지하철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부산, 대구지하철 등에서는 사용불가

□ 인증제도의 종합·조정 체계 미흡

- 유사한 인증제도가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 검토없이 신설되고 있는 추세
 - * '05년 이후 재제조마크인증(산자부),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(환경부) 등 신설 추진
- 제품인증제도 도입시 국가표준심의회 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실적 전무
 - * 서비스, 시스템 등의 분야와 지방자치단체, 민간기관의 인증에 대해서는 보고 장치도 부재

< 외국의 인증제도 운영 현황 >

◆ E U

- 유럽통합과 함께 안전·위생·건강, 환경 및 소비자보호 관련 강제규제 대상을 CE마크로 통합 운영 ('93.7)
 - * 소비자의 건강, 안전 등과 관련된 전기 및 공산품 중심의 22개 품목군 22천여 제품 (인증제도 정비 소요기간 : 8년)
- CE마크와 별도로 각국별 안전, 환경, 식품 등에 대하여 강제 인증 및 임의인증마크 운영
 - * 독일(VDE), 스웨덴(SEMKO), 덴마크(D-mark), 프랑스(LGIE) 등

◆ 중 국

- 국내제품(CCEE)과 수입제품(CCIB)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인증 제도를 CCC마킹 시스템으로 통합 ('02.5)
 - * 전기제품, 통신기기, 완구류, 압력용품 등 19개 유형, 325개 제품을 CCC 마크로 통합 (인증제도 정비 소요기간 : 3년)
 - * 4대 통일원칙 : ①기술규범·기준·적합성평가 ②중복품목 ③인증마크 ④인증비용기준의 통일
- CCC 이외의 별도 강제인증과 自願(임의)인증도 시행
 - * 강제인증 : NAL(통신장비), SFDA(의료기) 등 5개 인증
 - * 자원인증 : CCCAP(자동차), CQM(농업제품 등) 등 5개 인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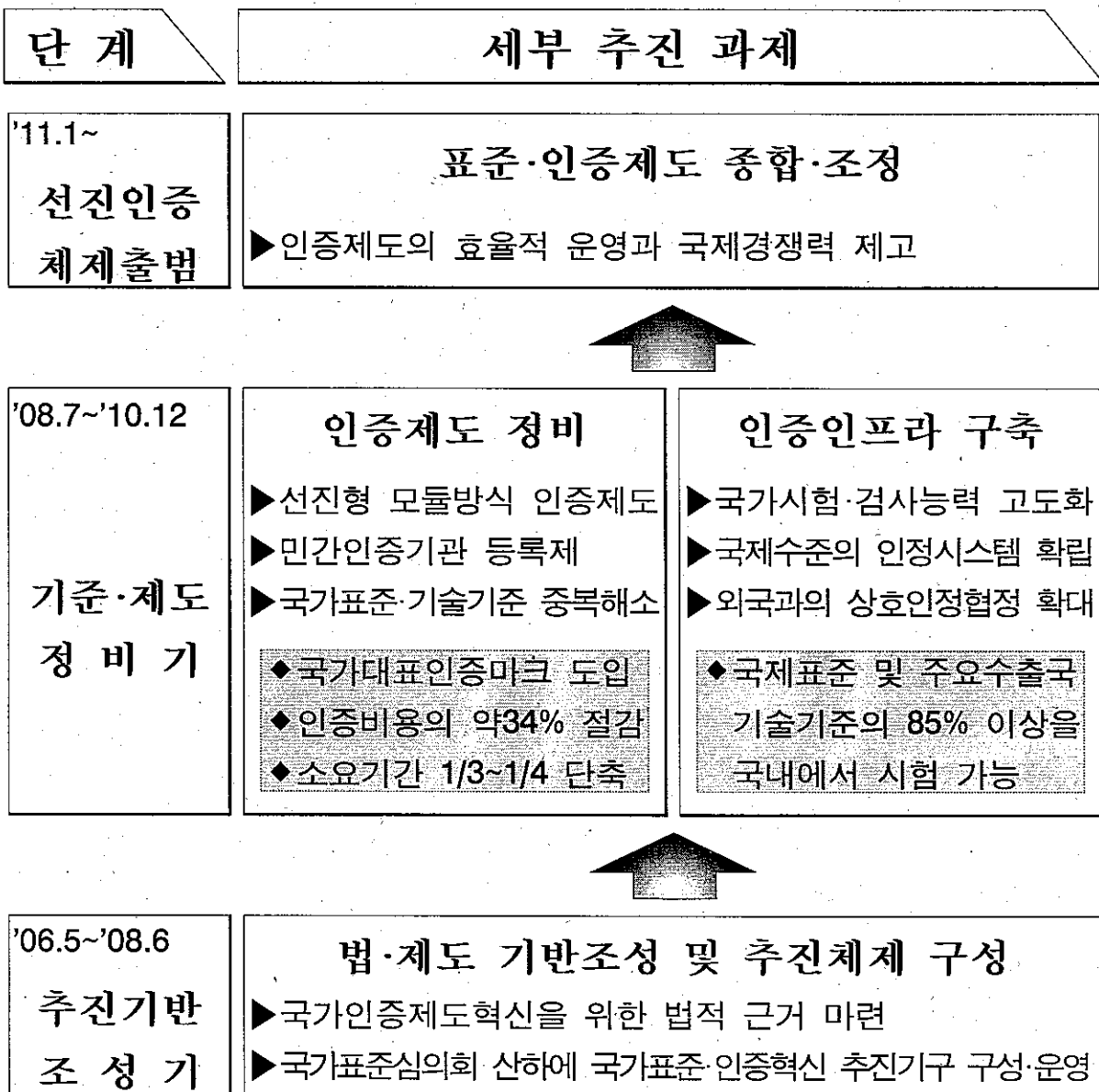
◆ 일 본

- 강제인증제도를 PS(Product Safety) 마크로 통합·표시
 - * PSE(전기제품), PSC(공산품), PSTG(가스용품), PSLPG(가스)

IV. 국가인증제도 혁신방안

기본방향

- ◆ 국가인증제도 전면개편을 통한 중복해소 및 비용절감
- ◆ 국내 인증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확충
- ◆ 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정비



1 국가인증제도의 전면 개편

이행과제

- ▶ 법정강제인증: 모듈 방식 인증시스템 및 통합마크 도입
- ▶ 법정임의인증: 인증기준 중복 해소, 부문별 마크 운용
- ▶ 민간인증: 제도적 관리·육성 체제 마련
- ▶ 표준: 국가차원의 통일된 표준관리 체계 확립

1-1 강제인증제도의 통합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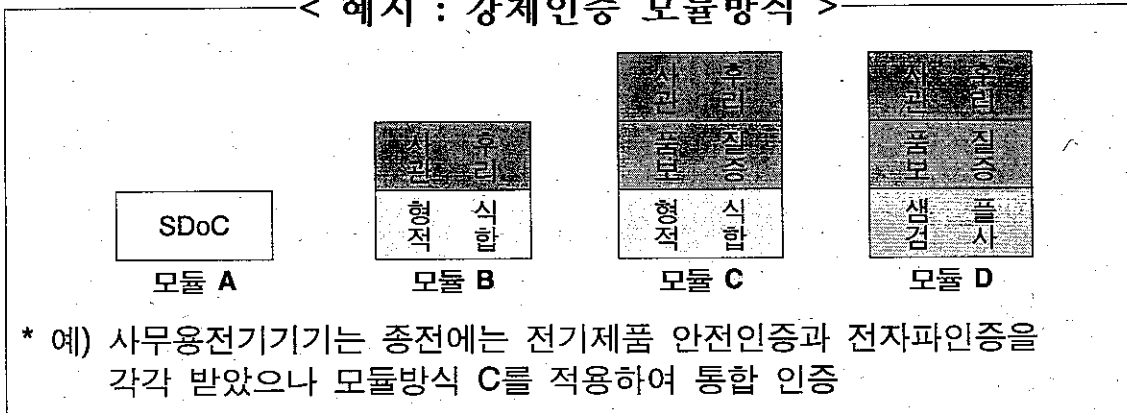
□ 통합 인증절차 도입

○ 모듈별 심사체제를 도입, 원스톱 인증 실시 (CE마킹방식)

- 모듈방식 도입에 따라 하나의 제품에 하나의 인증절차 확립

* 모듈방식은 안전성, 공공복리 등 제품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선언 (SDoC), 형식적합, 품질보증, 샘플검사, 사후관리 등의 방법을 조합

< 예시 : 강제인증 모듈방식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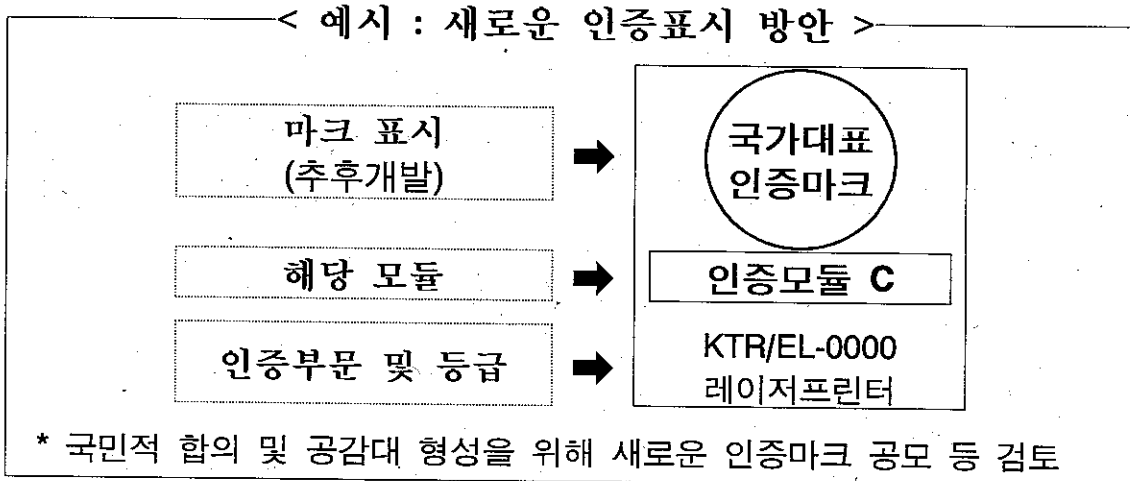
- 기업은 품목별로 관련성이 높은 인증기관을 선택, 인증신청
 - 원칙적으로 국제공인기관이 법정(강제·임의) 인증업무 수행
 - * 인증기관은 현행과 같이 소관 부처가 관리 (지정, 신고, 등록 등)
-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실시
 - * 자체 시험이 불가능한 분야는 타 시험기관에 의뢰

< 강제인증제도 운영 방안 >

- ◆ 법정 인증제도에 적용하는 모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시
- ◆ 모듈별 해당 제품군을 분류·공고하고 모듈별 신청양식, 절차, 사후관리 방식 등을 단순·통일화
- ◆ 인증관련 법령 또는 기술기준에 세부평가절차를 규정하는 대신 적절한 인증모듈을 명시 (기존 법령·기술기준도 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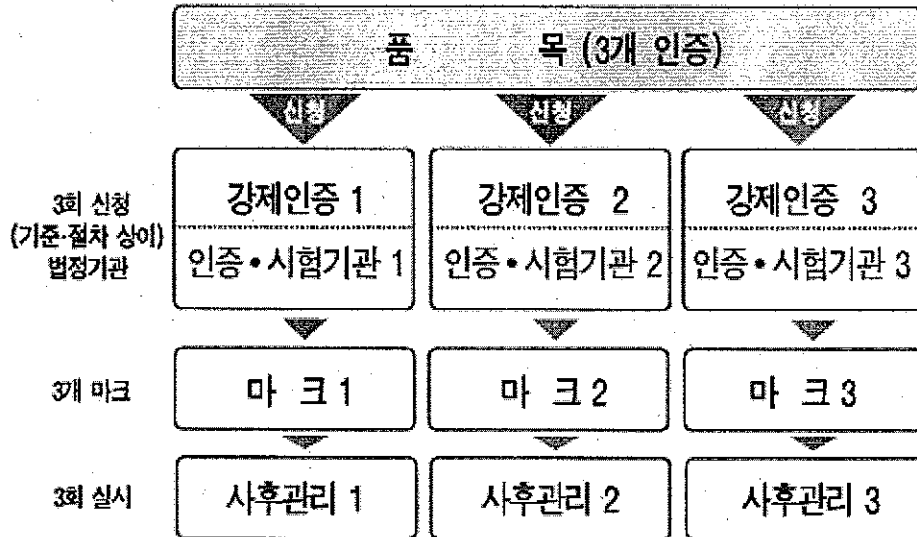
□ 국가대표 인증마크(National Mark) 도입

- 강제인증 제품에는 통합인증마크 표시
 - 소비자의 식별편의를 위해 제품의 인증표시방법도 개선
 - * 제품의 인증 모듈 및 인증부문, 인증번호, 인증기관 등을 함께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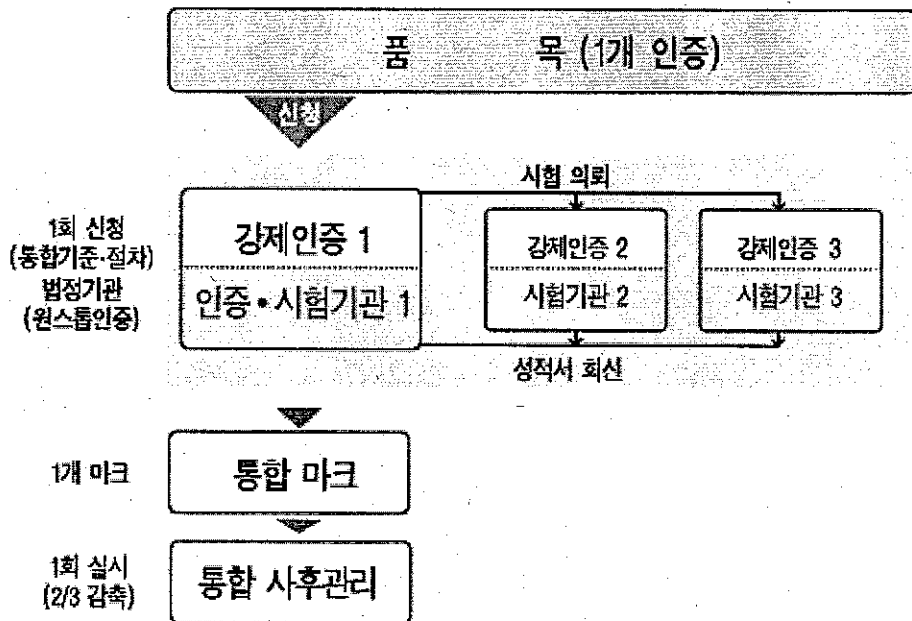


< 강제인증 제도 정비 방안 >

< 현행 >



< 개편 후 >



1-2 법정 임의인증제도 개선

□ 인증제도간 중복의 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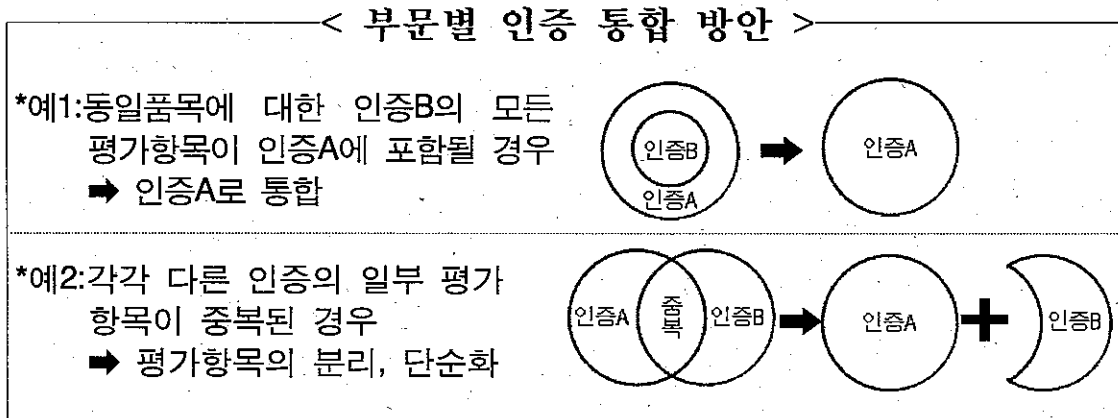
○ 인증제도간 단순·통일화

- 인증목적이 유사한 제도는 통합화(예1)
- 동일품목에 인증기준과 절차가 유사한 경우에는 단순화(예2)

* 품질, 환경, 보건, 에너지 등 전문분야별로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역할 조정

○ 유사마크는 부문별로 단일화

* 예시 : 농림부의 농산물 품질인증과 특산물인증의 마크



□ 임의인증 인센티브 정비 및 상호인정 확대

○ 인증별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합·개선

- 정부·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단일화로 중복인증 취득 방지

○ 인증제도간 상호인정 확대

- 중복시험의 경우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으로 시험 면제

➔ 장기적으로 유사한 인증은 통합을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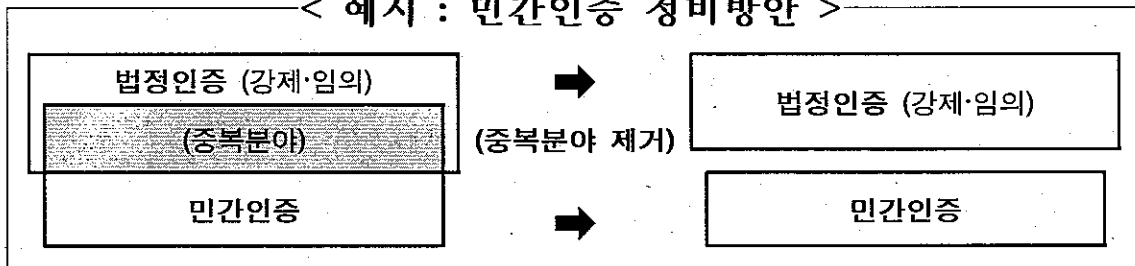
1-3 민간인증의 제도적 관리

□ 민간인증에 대한 관리시스템 도입

- 소비자·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등록제 도입
 - 기관은 현행과 같이 소관 부처에서 관리
- 인증기준은 민간인증협의회(가칭)에서 상호 검토·조정
- 법정인증(강제·임의)과 중복되는 품목은 인증 내용의 차별화 등을 통해 중복 해소

* 법정 임의인증제도의 단일화 방법으로 단계적 자율조정

< 예시 : 민간인증 정비방안 >



□ 민간인증제도의 발전·지원 기반 조성

- 민간인증협의회의 자율조정을 통해 인증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
 - 인증절차,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
- 민간 인증기관은 국제공인인증기구의 인정을 받도록 유도
- 중복해소 노력에 동참하는 우수인증기관에는 시험·검사 설비 구입비 등 지원

1-4 인증기준 관리체계 확립

□ 범부처 기술기준 제정 시스템 혁신

- 각 부처는 소관 법령의 이행을 위한 기술기준을 제정·고시
 - 기술기준은 WTO/TBT협정 등 국제적 기준과 절차 준수
- 기술기준은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·시험방법 등 공통사항은 원칙적으로 국가표준을 인용
 - 기술기준 안의 작성은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PSDO 등을 활용하여 개발단계에서 중복 방지

< 참고 : 국가표준의 제정 방안 >

- ◆ 국가표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등과 부합화하여 제정·고시하되 국가표준안 작성은 PSDO 등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
 - 표준화포럼, 협회, 학회 등 부처별 소관분야 전문기관을 PSDO(표준개발협력기관)으로 지정하되 정부부처, 기업, 개인 등도 국가표준 제안 가능
- * PSDO : Partner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

□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의 연계 강화

- 국가표준·기술기준의 체계적인 규격번호 부여 체제 도입
 - 규격간 상호중복, 국제부합화 등을 검토·조정하고 단일 체계의 번호(Code) 부여
- * 기존 국가표준과 기술기준도 단일체제 편입을 위해 개정 후 새로운 번호체계에 따라 재고시

< 예시 : 번호부여 체제 >

◆ 국가표준

국가표준 기호 / 표준 일련번호

* 산자부 표준 예시 : XX / 0000

◆ 기술기준

기술기준 기호 / 부처 고유기호 기술기준 일련번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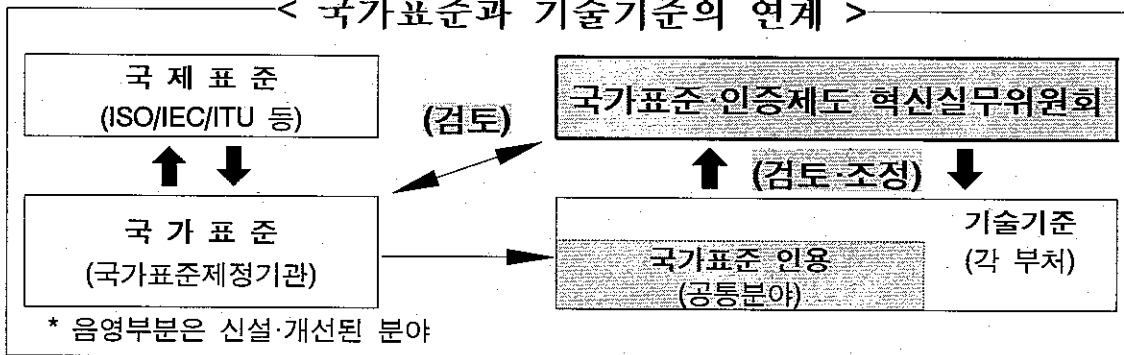
* 환경부 기술기준 예시 : YYY / EN 0000

< 국가표준 및 기술기준 단일체계 기호는 「위원회」에서 결정 >

○ 기술기준은 해당 부처에서 고시·운영

- * 제정절차 : 기술기준안 ➡ 예고 ➡ 검토·조정 ➡ 부처 고시
- * 검토·조정은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복 우려가 있는 경우

<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의 연계 >



□ 민간 인증기준의 관리 강화

- 각 기관은 민간인증기준안을 민간인증협의회에 통보하여 국가표준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
 - 민간인증기준의 심의는 기관별 자체심의 시스템을 이용
 - * 기관간 상호협의·조정, 민간인증기준번호 부여 및 예고·공고 등 절차 투명화
-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의 중복방지 방안마련
 - 민간인증기준과 국가표준·기술기준 간의 전환 활성화

2 국가인증제도 운영의 선진화

이 행 과 제

- ▶ 인증 신뢰의 핵심요건인 설비, 인력, 절차의 국제수준화
- ▶ 인증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인증산업의 발전기반 구축

2-1 인증 설비·인력·절차의 국제 신뢰성 확보

□ 국제수준의 시험·검사 인프라 확충

- 선진국 시험분석 기관과 대등한 수준의 시험장비 구축
 - '10년까지 550억원을 투입, 시험장비의 국제수준화 및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여건 조성
 - 민간 시험·검사기관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지원방안 강구 (현재는 시험·검사기관을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)
 - 정밀측정 분야의 표준물질³⁾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 ('05) 110종 → ('10) 300종
- ISO/IEC 등의 국제시험방법규격 중 국내시험 가능분야 확대 : ('05) 65% → ('10) 85%

< 예시 : 주요 지원분야 >

| 분 류 | 주요 투자 분야 및 기기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자·정보 | 전자파 및 유·무선 분야 시험, 음향품질평가 등 |
| 화학·생명 | 내분비계 장애물질 분석, 환경·생체소재 미량무기원소 분석 |
| 건축·역학 | 건축 내장재의 유해성, 건축재료 연소시 유해가스 분석 |
| 생활·섬유 | 의료용구 생체적합성 평가, 의복의 촉감 등 감성시험 분석 |

3) 표준물질 : 제품, 물질의 특성값 측정을 위한 기준물질
(예 : 음주측정기 검사·교정을 위한 표준 알콜가스 등)

□ 시험능력 국제 비교평가 확대

- 「국제 숙련도 비교평가⁴⁾ 프로그램」에 참여를 확대하여 국내 시험·측정 능력의 국제 신뢰도 제고
 - 주요 국가의 규제분야 또는 안전, 환경, 위생분야 우선 실시 (가전제품, 유해성 화학물질 및 독성물질 등)
- * ('05) 2개 프로그램 (2개국) → ('10) 5개 프로그램 (10개국)

□ 새로운 인증수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

- PSDO, 인증기관 심사원을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·인정하는 인증기관 심사원 자격제도 도입
 - * 국제기준인 ISO/IEC Guide 65(제품인증기관의 일반 요건)에 따라 인증심사와 컨설팅을 분리하여 심사의 공정성·신뢰성 제고
- 복지, 환경, 서비스 등의 신산업 분야 인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(연 600여명 교육)
 - * 교육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교육기관 지정·육성 및 실무 교육용 교재 개발 지원

□ 인증기관의 국제공인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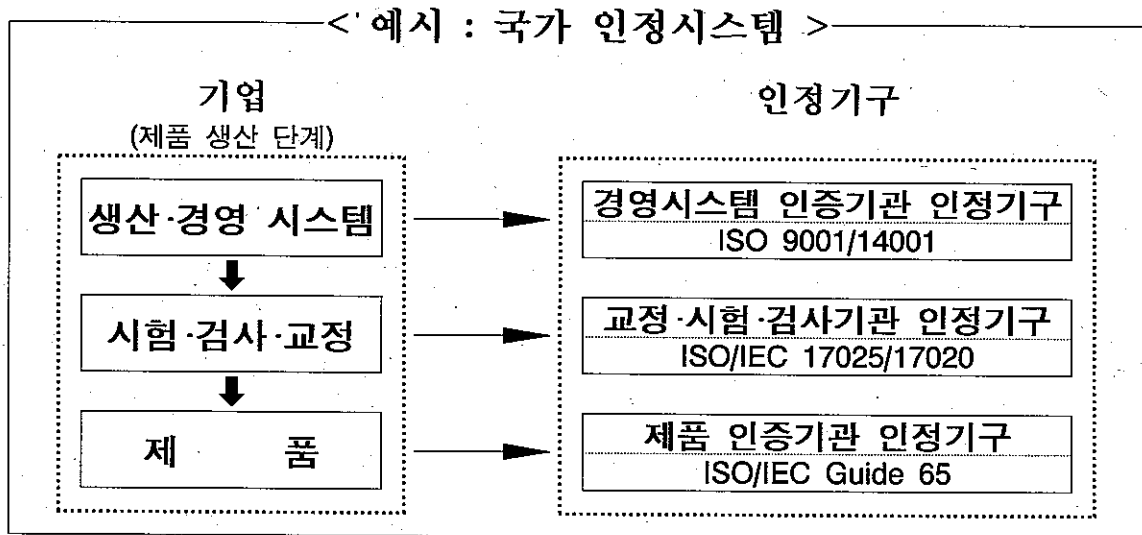
- 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요건을 국제기준에 따라 정비
 - 인증제도 도입시 인증기관의 자격은 국제공인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관을 원칙
- * 기존 인증기관은 유예기간 부여, 국제공인 필요성이 없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 예외 인정

4) 숙련도 비교평가 : 시험·분석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같은 재료를 모든 기관이 동시에 시험한 결과를 상호 비교

□ 국가 인정 시스템 확립

○ 국내 적합성평가 업무 총괄·조정 체제 구축

- 교정·시험·검사, 시스템인증, 제품인증 분야 등 인정기구 관련 사항 종합·조정 방안 마련 (운영·설치 검토 등)
- 법정인증 등 국제공인이 필요 없는 분야는 각 부처의 현행 체제 유지



○ 선진국과 동등 수준으로 국내 인정기구 기능강화

- 제품인정의 활성화 및 서비스인증, 인력인증 등 신규 인증분야 인정체제 확대·도입
- 국내 인정기구의 인력확대 및 선진인증기구(UKAS, NATA 등)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 제고

* UKAS : 영국 인정기구, NATA : 호주 인정기구

- 민간의 인증제도는 점진적으로 국제공인을 받도록 유도

2-2 인증제도 지원기반 강화

□ 법정 임의인증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
○ 인증제품의 우선구매 제도 개선

- 정부 조달계획에 통합 인증제품 우선구매를 반영하고 우선구매 실적확인 제도 마련 (공공기관 등의 기관평가지 실적 반영)

* 한국전력,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법정인증제품의 납품검사 면제 등도 검토

- 인증별 우선구매 제도를 통합하여 법정인증 품목에 공통 적용

○ 우수인증에 대한 포상 등 인증기관의 차별화를 유도

- 우수관리 업체는 우수품질관리 정도에 따른 사후관리 차등화 등의 혜택 부여

□ 인증제도 활용 편익 증진

○ 원스톱 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인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(인증기관의 다기능화)

- 적합성평가기관의 분할·합병 등 구조조정시 설비구입 등 예산 지원 및 세제상의 지원(「조세특례제한법」등에 반영)

○ 인증관련 소비자 불만 처리 시스템 구축

- 인증제도와 관련된 기준개정, 기업애로 및 소비자불만 사항의 접수·처리를 위한 국가인증지원센터(가칭) 운영

○ 중소기업의 CE, UL 등 해외인증 취득 추진시 지원 확대

- 해외 인증기관의 심사원과 동일한 수준의 컨설턴트 육성

* 중소기업청의 「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」의 확대·개편

□ 서비스 및 신산업 분야 인증확대 기반마련

- 제품인증제도 통일방안을 국가서비스 인증 등으로 확대
 - 신규 법정인증은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국가표준심의회 보고 후 도입, 난립 예방
 - 서비스 인증도 도입 초기단계부터 난립 예방 (법적근거 마련)
- 기술인증, 디자인·감성 인증 등 제품인증 이외의 분야에 대한 지원 기반 마련
 - 다양한 인증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및 인증 절차에 대한 **Guide Line** 제정

□ 「국가 인증정보 네트워크」 시스템 구축

- 인정·인증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합성평가기관간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소비자들의 인증정보 획득 지원
 - 품목별·모듈별 인증기준, 인증기관, 인증업체 및 제품에 대한 종합 정보 제공
 -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가표준·기술기준 열람방식 통합
 - * 인터넷 통합 홈페이지에서 국가표준과 19개 부처 기술기준을 제공
- 중소기업 등이 애로를 느끼는 외국의 규제품목·적용기준·절차 등 국내·외 인증관련 정보포털 구축
 - * 국가표준 및 지식정보망 포털서비스 구축사업 추진

2-3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(MRA)의 확대

□ 국가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으로 MRA 추진

- 대상국별 교역량, 인증제도, 기술적 신뢰성 등 협상 대응 방안을 사전에 수립 (교역량이 많은 EU, 미국 및 인도 등 신흥시장)
- 상호인정 추진 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수출시 받아야 하는 각국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MRA 효과 거양

□ 국내·외 인증시장의 점유율 확대

- 인증기관의 질적 고부가가치화, 글로벌 체제 구축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
 - 다국적 인증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첨단·특수분야 인증 진출 및 동남아 및 중국 등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
- * 세계 시험·인증시장은 연간 890조원 규모로 추정

< 예시 : 상호인정 추진 경로 >

◆ FTA 협상 : 무역상기술장벽·상호인정협정

- * 한-싱 FTA : 전기용품, 유·무선 통신기기 등 2개 분야 MRA 타결
- * 한-일 FTA : 법정계량, 가스·압력용기 등 4개 분야 MRA 추진 중

◆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가입 (정부간 또는 민간차원)

- * 기존 : IECEE-CB(전기용품안전), ILAC-MRA(시험·교정), APEC-MRA 등
- * 향후 : PAC-MLA(제품 인증분야), OIML-MMA(계량기) 등 신규가입

◆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

- * 한·캐나다, 한·미 정보통신기기 MRA

◆ 인증기관간 MRA 확대 지원

- * 국내 인증기관과 외국 인증기관 간의 시험성적서 및 공장검사 MRA 체결
- * 예 : 산업기술시험원-JQA(일본) 간 인증업무 대행 MOU 등

3 인증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

이행과제

- ▶ 표준과 적합성평가 분야의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집행조직 구성·운영

3-1 인증제도 관련법령 정비

□ 법적 근거 마련·추진

- 「국가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(가칭) 제정 또는 「국가표준기본법」 개정
 - 통일된 인증기준 관리, 인정·인증제도, 통합인증마크 운용, 표준·인증 담당 조직간 역할 분담 등 규정

□ 표준 및 인증제도 관련 법령 정비

- 각 부처의 표준·인증관련 법령의 정비
 - 인증의 체계화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편 (86개 법령)
- 표준·기술기준·인증 관련 내용 개정 병행추진
 - 개별 법령의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표준·기술기준, 절차 및 인증요령 등 마련

< 법령정비(안) 주요 내용 >

◆ 국가적합성평가위원회(가칭)

- 구성 : 관계부처, 민간위원 참여
- 기능 : 부처별 인정·인증, 국가표준·기술기준 분야 조정·관리
- 조직 : 위원회 역할 지원을 위한 사무국 운영

◆ 인정제도

- 인정의 범위 : 시험·검사·교정, 제품, 시스템, 요원, 서비스, 식품안전 등
- 인 정 기 구 : 위원회는 인정기구 종합·조정

◆ 인증제도

- 인증 : 국제공인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 수행
- 법정 강제인증 : 모듈 및 국가대표 인증마크 도입
- 법정 임의인증 : 통합, 동일 인센티브, 시험성적서 상호의제
- 민간 임의인증 : 등록제, 우선구매제, 민간인증협의회 구성, 우수인증기관 지원 등

◆ 국가표준 및 기술기준

- 표준과 기술기준의 용어정의, 번호부여 체계
- DB 운용을 통해 국가표준, 단체표준, 기술기준 등 정보제공

◆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

- 시험·검사능력 기반구축 지원
- 인증심사원·평가사 자격제 및 시험요원 양성 등
- 적합성평가기관의 분할, 합병, 양수시 예산 및 세제지원

◆ 다른 법령의 개정(부칙) : 표준·인증 관련 법령의 정비

3-2 국가 표준·인증혁신 추진체제 구축

□ 「국가표준·인증제도 혁신실무위원회」 운영

-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의결된 추진계획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「국가표준·인증제도 혁신실무위원회」 구성·운영
 - 부처의 종합적·중립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내에 설치 (위원장 : 경제조정관)
 - * 미국의 ICSP⁵⁾의 사례 참고
- 「혁신실무위원회」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무작업반 설치
 - 관계부처 공동으로 구성하고 표준·인증제도 혁신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, 혁신실무위원회에 상정 (산업지원부 기술표준원에 설치)

< 「혁신실무위원회」의 역할 >

- ① 법적 근거 마련 및 규격·인증관련 법령의 정비안 마련
 - * 신규 법정인증 도입시 국제부합화 및 타당성 사전 검토
- ② 법정강제인증의 모듈화된 인증절차 및 법정임의인증·민간인증의 중복품목 세부 정비방안 결정
 - * 통합모듈화 및 국가대표인증마크 대상 제외품목(의약품 등) 검토
- ③ 각 부처의 기존 기술기준의 상이, 국제부합화 등을 검토, 체계적 규격번호 부여방안 마련
 - * 법정인증과 민간인증 중복방지, 국가표준-민간인증기준 상호전환 활성화 방안 마련
- ④ 인증기관 지정·사후관리 체계 및 운영기준의 국제화 검토
 - * 인증기관의 국제공인화 검토 및 국가인정 시스템 확립

5) ICSP (국가표준정책위원회, Interagency Committee on Standards Policy) : 행정부처(14개), 독립규제위원회(12개), 대통령직속기관(2개) 참여

3-3 소요 예산

□ 사업추진 예산확보 방안 수립·추진

- 102~309억원/年 규모로 5년간 총 1,122억원 소요 전망
 - '06년은 우선 산자부 R&D 및 산기반자금 등을 활용, 국가인증제도 혁신사업이 출범할 수 있는 예산(약102억원) 확보
 - '07년 이후는 동 계획 확정에 따라 별도 예산을 확보
- * 관계 부처 matching fund로 예산 분담(각 부처는 자체 예산 확보 노력 병행)

(단위: 억원)

| 예산소요 항목 | 2006 | 2007 | 2008 | 2009 | 2010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□ 기술기준정비 | | | | | |
| - 안전분야 정비 | 15 | 40 | 35 | 30 | 30 |
| - 환경, 보건 분야 정비 | 10 | 50 | 45 | 35 | 35 |
| - 민간인증기준 및 기타 정비 | 10 | 35 | 20 | 20 | 15 |
| 소 계 | 35 | 125 | 100 | 85 | 80 |
| □ 인증 관리체계 구축 | | | | | |
| - 통합마크개발, 인증모듈설계 | 2 | 2 | - | - | - |
| - 인증제도 운영의 국제화 | 5 | 15 | 15 | 10 | 10 |
| - 홍보 및 교육 | 3 | 5 | 5 | 3 | 3 |
| 소 계 | 10 | 22 | 20 | 13 | 13 |
| □ 적합성 평가 기반 확충 | | | | | |
| - 인증전문인력 양성 | 2 | 5 | 8 | 10 | 10 |
| - 적합성 평가 인프라 확충 | 50 | 50 | 100 | 150 | 200 |
| - 국가 인증 네트워크 구축 | 2 | 5 | 5 | 5 | 3 |
| - 상호인정협정(MRA) 확대 | 3 | 2 | 3 | 3 | 3 |
| 소 계 | 57 | 62 | 116 | 168 | 216 |
| 합 계 | 102 | 209 | 236 | 266 | 309 |

V. 기대 효과

□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

- 인증 절차의 단순화, 사후관리 부담 등 적합성 평가의 국제화를 통한 수출확대 기반 조성
- 선진형 인증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
- One-stop 인증이 가능함에 따라 중복 인증에 따른 기업의 비용·인력 부담 해소

* 인증제도 개선으로 기업 당 인증비용의 약 34% 절감 및 소요기간의 1/3 ~ 1/4 단축 예상 ('06.1. 산업기술시험원)

□ 소비자 편익 제고 및 예산 절감

- 규제 분야에 대한 체계적 표준화로 국가인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
- 규격 제정·개정 비용, 시험설비 비용, 물품·용역 부분의 낭비요인 원천 차단, 정부예산 절감

* 1,122억원의 예산을 투입, 7,900억원의 인증획득비용 절감 효과

○ 남·북 경제협력사업의 촉진 토대 마련

* 표준과 기술기준이 통합 관리됨으로써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남·북 표준협력사업 가능

□ 인증 관련 산업 육성

- 국내 인증산업의 국제수준으로 위상 제고

* 향후 유럽 CE, 중국 CCC, 미국 UL과 같이 해외 진출 추진

- 첨단 시험의 신뢰성 향상을 통해 국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신기술·신제품 연구개발의 기반 조성

VI. 추진계획

1단계('06.5~'08.6)

관련 제도 설계

- 추진계획 후속작업을 위해 관계부처·전문가 공동협의 기구인 「국가표준·인증제도 혁신실무위원회」 및 실무작업반 구성
 - 통합인증마크(강제인증) 개발 및 인증제도간 중복현황 조사·분석 및 정비, 국가표준·기술기준 관리절차 등 마련
- 법적 근거 마련·추진
 - 「국가적합성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또는 기존의 「국가표준기본법」 개정

2단계('08.7~'10.12)

관련제도 및 규격 정비 등 착수

- 새로운 인증제도의 단계별 시행
 - 인증제도 통합모듈 적용 및 관련법령 개정 등 관련제도 및 표준·기술기준 등 정비 착수
 - * 국제기준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요건 등 정비
 - 인력양성, 장비구축, 국제협력 등 적합성 인프라분야 투자에 주력, '11년 이후 선진표준체제 출범에 대비

3단계('11.1~)

표준·인증제도 종합·조정 체제 출범

- 국가표준·인증제도의 선진화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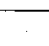
[참고]

법정강제 인증제도 현황

| 구분 | 관급부처 | 대상분야 | 관련 법률 | 대상품목 | 인증마크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
| 안전 | 산자부 | 전기용품 | 전기용품안전관리법 | 전선/전원코드 등 | ㉞ | |
| | | 공산품 |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| 등산용로프 등 | ㉞ | |
| | | 승강기 |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| 승강기부품 등 | ESQ마크 | |
| | | 가스용품 |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| 가스렌지 등 | ㉞ | |
| | | 고압가스용기 | 고압가스안전관리법 | 안전밸브 등 | ㉞ | |
| | | 열사용기자재압력용기 | 에너지이용합리화법 | 1,2종 압력용기 | ㉞ | |
| | | 항공기부품 |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| 고정익비행기 등 | - | |
| | 건교부 | 자동차 | 자동차관리법 | 동력전달장치 등 | - | |
| | | 항공기 | 항공법 | 항공기 등 | - | |
| | | 기계식주차장 | 주차장법 | 기계식주차장치 등 | - | |
| | | 내화구조 | 건축법 | 건축용 벽체 등 | - | |
| | 정통부 | 무선설비기기 | 전파법 | 무전기기류 등 | MIC | |
| | | 전자파장해기기 | 전파법 | 정보기기류 등 | | |
| | | 전기통신기자재 | 전기통신기본법 | 유선단말기 등 | | |
| | 해수부 | 선박 | 선박안전법 | 구명정 등 | - | |
| | 노동부 | 유해/위험기기 | 산업안전보건법 | 프레스/전단기 등 | ㉞ | |
| | | 압력용기 | 산업안전보건법 | 갑종/을종 압력용기 | ㉞ | |
| | 문화부 | 무대시설 | 공연법 | 조명시설 등 | - | |
| | 품질 | 산자부 | 계량기 | 계량에관한법률 | 전기계기 등 | - |
| | | | 에너지효율 | 에너지이용합리화법 | 형광램프 등 | ㉞ |
| | | 환경부 | 정수기 | 먹는물관리법 | 정수기구조/재질 등 | ㉞ |
| 건교부 | | 건설기계 | 건설기계관리법 | 불도우저 등 | - | |
| 행자부 | | 소방용품 | 소방법 | 소화기, 방염재 등 | ㉞ | |
| 환경 | 환경부 | 환경측정기기 |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|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등 | - | |
| | | 자동차소음 | 소음진동규제법 | 자동차주행소음 등 | - | |
| | | 자동차배출가스 | 대기환경보전법 | 자동차배출가스 등 | - | |
| | | 폐기물처리시설 | 폐기물관리법 | 매립지시설 등 | - | |
| | | 친환경건축자재인증 | 실내공기질관리법 | 건축자재 등 | - | |
| | 해수부 | 안전설비 | 해양오염방지법 |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| - | |
| 보건 | 복지부/식약청 | 의약품 | 약사법,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| 의약품/마약류 등 | - | |
| | | 의료기기 | 의료기기법 | 의료기기 | - | |
| | | 화장품 | 화장품법 | 기능성화장품 등 | - | |
| | | 신원료 검사 | 화장품법 | 기능성화장품 등 | - | |
| | | 식품/식품첨가물 등 | 식품위생법,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| 식품첨가물 등 | - | |
| 9개 부처 34개 분야 | | | 32개 법령 | | | |

법정임의 인증제도 현황

| 구분 | 관련부처 | 인증제도 | 인증기관 | 근거법률 | 대상품목 | 인증마크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안전 | 산자부 | 공산품안전검정 | 산자부 |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| 유해물질 함유 섬유제품 등 |  |
| | 노동부 | S마크제도 | 한국산업안전공단 | 산업안전보건법 | 산업용기계 및 설비 |  |
| | 농림부 | HACCP | 국립수의과학검역원 | 축산물가공처리법 | 축산품작업장 | |
| 품질 | 산자부 |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(KS마크) | 한국표준협회 한국식품연구원 | 산업표준화법 | 공산품 가공식품 |  |
| | | 품질경영체제인증(ISO9000) | 35개 ISO9000인증기관 |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| 품질경영시스템 |  |
| | | 신뢰성인증(R마크) | 기술표준원 |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등에관한특별조치법 | 부품 및 소재 |  |
| | | 품질표준설비인증 | 기술표준원 | 유통산업발전법 | 파레트 등 |  |
| | |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인증 | 한국표준협회 |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| 제조업, 건설업 등 |  |
| | 중기청 |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(GQ마크) | 중소기업청 |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| 우수 중소기업 제품 |  |
| | | 성능인증 | 중소기업청 |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| 중소기업제품 | |
| | | 싱글 PPM 품질인증 | 대한상공회의소 |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| 제조업체 |  |
| | 농림부 | 농산물품질인증 |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| 농산물품질관리법 | 품질우수농축산물 |  |
| | | 친환경농산물인증 | " | 친환경농업육성법 | 친환경농산물 |  |
| | | 전통식품인증 | 농림부 |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| 전통식품 |  |
| | | 특산물인증 |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|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| 특산물 |  |
| | 산림청 | 임산물품질인증 | 국립산림과학원 |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| 임산물 |  |

| 구분 | 관련부처 | 인증제도 | 인증기관 | 근거법률 | 대상품목 | 인증마크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품질 | 건교부 |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 | 건교부 | 도시철도법 | 도시철도차체 및설비용품등 |  |
| | |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인증 | 건교부 | 건설기술관리법 | 철강구조물 | |
| | 재정경제부 | 기술평가인증 | 기술신용보증기금 | 기술신용보증기금 법 | 제조업체 | |
| | 해수부 | 수산물품질위생 인증 | 국립수산물품질검사 원 | 수산물품질관리법 | 수산물 및 수산 물가공품 |  |
|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| | 해수부 | 수산물품질관리법 | 수산전통식품 |  | |
| 에너지 | 산자부 |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| 에너지관리공단 | 에너지이용합리화법 | 고효율유도 전동기 등 |  |
| | | 에너지마크 | " | " | 절전형사무 가전기기 |  |
| | |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인증 | " | 신·재생에너지개 발보급및이용보급 촉진법 | 태양열온수기 등 |  |
| | | 건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 | 산자부 | 에너지이용합리화법 | 18세대이상공동주 택 | |
| 신기술 | 산자부 | 한국신기술인증 (NT마크)  | 기술표준원 | 산업발전법 | 신기술(NET) 인증과 신제품(NFP) 인증으로 통합 운영 | |
| | | 우수품질인증 (EM마크)  | " | " | | |
| | 과기부 | 국산신기술인증 (KT마크)  |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| 기술개발촉진법 | | |
| | 정통부 | 우수신기술인증 (IT마크)  | 정보통신연구관리단 | 정보화촉진기본법 | | |
| | 건교부 | 건설신기술지정 제도(CT마크)  | 건설교통기술평가원 | 건설기술관리법 | | |
| | 환경부 | 환경신기술제도 (ET마크)  | 환경관리공단 | 환경기술개발및지원 법률 | | |

| 구분 | 관련부처 | 인증제도 | 인증기관 | 근거법률 | 대상품목 | 인증마크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환경 | 산자부 | 환경경영체제인증(ISO14000) | 28개 ISO14000인증기관 |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 | 환경경영시스템 | KSA  |
| | | 환경설비품질인증 | 기술표준원 | " | 국내개발환경설비 |  |
| | |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(GR마크) | 기술표준원 |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| 일반폐지 등 재활용제품 |  |
| | 환경부 | 환경마크 | 친환경상품진흥원 | 환경기술개발및지원법률 | 생산소비과정에 저오염, 자원절약 제품 |  |
| | | 환경성적표지제도 | 환경관리공단 | " | 제품의 환경영향 |  |
| | | RPF품질규격인증 | 환경자원공사 |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| 폐플라스틱고형 연료재활용제품 | |
| | | 배출가스저감장치및저공해엔진 | 환경부 |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| 경유자동차 | |
| 소프트웨어 | 정통부 | GS 인증 | 정보통신기술협회 |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| IT 소프트웨어 |  |
| | |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 | 국가정보원 | 정보화촉진기본법 | 보안제품 | |
| | | 정보보호관리체제인증 | 한국정보보호진흥원 |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|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 |  |
| | 산자부 | ES인증 | 기술표준원 | 산업발전법 | 산업용 소프트웨어 |  |
| | | eTrust인증 | 전자거래진흥원 | 전자거래기본법 | 인터넷으로 상거래하는 품목 |  |
| 서비스 디자인 | 산자부 |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| 기술표준원 |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| 유통서비스업 등 |  |
| | | 우수산업디자인마크(GD) | 한국디자인진흥원 | 산업디자인진흥법 | 제품/포장 디자인 등 |  |
| 단체인증 | 산자부 | 우수단체표준인증제도 |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 13개 단체 | 산업표준화법 | 전기제품 등 |  |
| 11개 부처 46개 분야 | | | 29개 법령 | | | |

민간 인증제도 현황

| 구분 | 관련부처 | 인증제도 | 인증기관 | 근거법률 | 대상품목 | 인증마크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민간 자율 | 산업별 전문 시스템 인증 (QS9000) | 8개 QS9000인증기관 | 민간인증(법적근거 없음) | 자동차관련부품 및 서비스업 |  |
| | " | 품질보증제도 (Q마크) |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6개 민간기관 | " | 생활용품 전반 |  |
| | " | K 마크제도 | 산업기술시험원 | " | 공작기계/산업 기계/의료기기 등 |  |
| | " | HS마크 |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| " | 위생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품목 |  |
| | " | 제품안전성(S마크) | 한국화학시험연구원 | " | 항균, 살균 등 안전성이 요구되는 제품 |  |
| | " | 귀금속 및 보석 상품의 품질보증 |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| " | 금, 은, 백금, 화이트골드 |  |
| | " | 건마크 |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| " | 건자재 관련 모든 제품 |  |
| | " | 홀마크 | 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| " | 금, 은, 백금, 합금 |  |
| | " | GH마크 | 한국보건산업진흥원 | " | 식품, 의약품, 화장품, 의료기기 |  |
| | " | 우수품질인증 | 한국보건산업진흥원 | " | 식품, 의약품, 화장품, 의료기기 |  |
| | " | HB마크 | 한국공기청정협회 | " | 장판, 마루 |  |
| | " | CA마크 | 한국공기청정협회 | " | 공기청정기 |  |

| 구분 | 관련부처 | 인증제도 | 인증기관 | 근거법률 | 대상품목 | 인증마크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민간 자율 | 상하수도용품 인증 | 한국상하수도협회 | 민간인증(법적근거 없음) | 수도용 역류 방지용 밸브 등 |  |
| | " | 건축설비인증 | 한국설비기술협회 | " | 온수 세정식 변좌 등 |  |
| | " | 아스콘인증 | 한국아스콘공업협동 조합연합회 | " | 내유동성아스 팔트혼합물 |  |
| | " | 자판기인증 | 한국지동판매기공업협회 | " | 슬라시, 커피복합 자판기 |  |
| | " | 조리기계인증 | 한국상업용조리기계 공업협동조합 | " | 전기식기건조 소독장 |  |
| | " | 염화비닐관인증 | 한국염화비닐관공업 협동조합 | " | 하수도용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|  |
| | " | 명품마크 | 한국의류시험연구원 | " | 신사복, 숙녀복 등 |  |
| | " | 위생가공마크 | 한국의류시험연구원 | " | 의류, 섬유제품 등 |  |
| | " | 원적외선마크 | 한국의류시험연구원 | " | 의류, 기타 가공품 |  |
| | " | 자외선차단마크 | 한국의류시험연구원 | " | 신사복, 숙녀복 등 |  |
| | " | 항가공마크 | 한국의류시험연구원 | " | 섬유제품, 공산품 등 |  |
| | " | 골드다운마크 | 한국의류시험연구원 | " | 오리털의복 등 |  |
| | " | 항균마크 | 한국의류시험연구원 | " | 가정용 합성 세제 등 |  |
| | " | EQ마크 | 한국의류시험연구원 | " | 섬유 및 피혁 가공제품 등 |  |
| | " | HS마크 |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 원 | " | 플라스틱 및 목재 제품등 |  |
| | " | 가구인증 |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 연합회 | " | 신발장 불박이장 |  |
| | " | 계측기기인증 | 한국계량계측기기공업 협동조합 | " | 프로세스 제어반 |  |

| 구분 | 관련부처 | 인증제도 | 인증기관 | 근거법률 | 대상품목 | 인증마크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| 민간자율 | SF마크 | FITI시험연구원 | 민간인증(법적근거 없음) | 의류, 문구류, 사무용품 등 |  |
| | " | ST마크 | 한국원구공업협동조합 | " | 원구류 |  |
| | " | 전자기장환경인증 |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| " | 전기용품 |  |
| | " | 전자파(EMC)환경인증 |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| " | 전기용품 |  |
| | " | TTA인증 |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| " | 정보통신기기 |  |
| | " | 광촉매인증 | 한국광촉매협회 | " | 광촉매용액등 |  |
| | " | KOSHA 18001 인증 | 한국산업안전공단 | " | 전사업장 |  |
| | " | ER마크 |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 | " | 화장품 | - |
| | " | 건강보조식품인증 |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| " | 건강보조식품 | - |
| | " | 명품브랜드인증 | 한국표준협회 | " | 공산품 |  |
| | " | 으뜸상품인증 | 한국표준협회 | " | 공산품 |  |
| | " | 미세먼지인증 | 한국화학시험연구원 | " | 공산품 | - |
| | " | 미생물인증 | 서울대학교미생물연구원 | " | 공산품 | - |
| | " | 세라믹소재신뢰성평가인증 | 요업(세라믹)기술원 | " | 요업용품 | - |
| | " | 국산의류인증마크 | 한국섬유산업연합회 | " | 의류 |  |
| | " | SCS인증 |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| " | 소프트웨어 |  |

| 구분 | 관련부처 | 인증제도 | 인증기관 | 근거법률 | 대상품목 | 인증마크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| 민간 자율 | 자일리톨함량인 증 | 대한치과의사협회 | 민간인증(법적근거 없음) | 껌 등 | - |
| | " |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| 한국교육학술정보원 | " | 소프트웨어 |  |
| | " | FI품질인증 | 한국원적외선응용 평가연구원 | " | 핸드폰 등 |  |
| | " | Wellbix인증 | 연세대학교 학술과학기술연구소 | " | 공산품 |  |
| | " | 우수 e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| 한국사이버교육학회 | " | 교육자료 |  |
| | " | 디자인품질인증 | 한국능률협회 | " | 공산품 |  |
| | " | 태극마크 | 한국귀금속센터 | " | 금, 은, 보석 | - |
| | " | 우수종합건강 진단센터 | 종합건강관리학회 | " | 병원 | - |
| | " | 절연성능인증 | 한국전기연구원 | " | 고압전기제품 | - |
| | " | 온도상승성능인 증 | 한국전기연구원 | " | 고압전기제품 | - |
| | " | 단락성능인증 | 한국전기연구원 | " | 고압전기제품 | - |
| | " | 개폐성능인증 | 한국전기연구원 | " | 고압전기제품 | - |
| | " | ASP인증 | IT렌탈산업협회 | " | ERP등 소프트웨어 |  |
| | " | LPG안전관리 우수판매업소 인증 | 한국가스안전공사 | " | LPG가스 판매점 |  |
| | " | 관광기념상품 인증 | 한국관광공사 | " | 관광기념상품 |  |
| | " | 콜센타품질인증 | 한국텔레마케팅협회 | " | 콜센타운영 기업 |  |
| 민간임의인증 61개 | | | | | | |